

# 대학원 학칙 행정전문대학원 시행세칙

2017. 03. 01. 제정  
2018. 03. 01. 일부개정  
2019. 03. 01. 일부개정  
2019. 04. 01. 일부개정  
2020. 03. 01. 일부개정  
<행정전문대학원 행정실>

## 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고려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 대학원학칙(이하 “학칙”이라 함)이 행정전문대학원(이하“대학원”이라 함)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교육목적) 본 대학원은 글로벌 역량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추고 공공부문의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혁신, 성과관리, 전략기획, 정책분석·평가, 갈등관리와 협력적 거버넌스 등에 전문화된 공직엘리트 및 정부 컨설턴트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교육목표) ① 정부 및 공공기관 관리자의 직무 전문성 제고와 경력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.  
② 국가정책 및 정부행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력과 응용력을 갖추고 공공 현안 해결에 특화된 역량을 지닌 실무형 전문가를 양성한다.  
③ 공공행정 및 정책 분야별로 과학적 분석에 입각한 전문화된 교육을 제공한다.

제4조(학위과정) 본 행정전문대학원은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을 둔다.

## 제 2 장 학적관리

### 제1절 입 학

제5조(입학자격) ① 석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

② 박사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
2. 국가법령과 학교규칙에 따라 제1항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

③ 지원자의 학위종류에 따라 입학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.

제6조(정원 외 입학) 입학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원 외로 입학할 수 있다.

1.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
2.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
3.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
4. 그밖에 국가법령 또는 학교규칙에 따라 정원 외 입학이 허용된 자

제7조(입학전형) ① 입학전형은 특별전형으로 시행한다.

- ② 전형방법은 서류심사, 구술시험으로 실시한다.

제8조(지원 절차) 입학을 하려는 자는 입학원서와 입시요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,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재입학)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제적된 자에 대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재입학 대상에서 제외한다.

1. 징계에 의한 퇴학 처분으로 제적된 자
2. 재학연한 경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
3. 그 밖에 학교규칙에 의하여 재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자

- ② 재입학은 1회에 한하며 제적된 날로부터 6학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입학을 할 수 없다.

- ③ 재입학은 전공분야가 제적이전과 동일한 경우에 한 한다.

## 제2절 휴학·복학·제적

제10조(휴학·복학) ① 학생은 학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.

- ②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 간을 초과하지 못하며, 재학기간 중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.

- ③ 휴학자는 휴학기간 중 학적을 보유하되,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삽입되지 아니한다.

- ④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복학하여야 한다.

제11조(자퇴) 스스로 퇴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제적을 허가할 수 있다.

제12조(제적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한다.

1. 휴학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등록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자
2.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자
3. 징계절차에 따라 퇴학 처분을 받은 자
4. 재학연한을 초과한 자
5. 자퇴한 자

### 제3절 등록과 수강신청

제13조(등록) ① 등록은 매학기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.

② 수료연구생은 매학기 수료연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③ 학위청구논문제출자는 해당학기에 학위청구 등록을 하여야 한다.

제14조(등록금) ① 등록금은 학교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등록금은 수업료, 입학금, 실험·실습비,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비용 및 그 밖의 납입금 등으로 한다.

③ 등록금의 액수 및 납입기일은 매학기 시작 전에 공시한다.

④ 기본 수업연한인 석사과정 4학기, 박사과정 6학기까지는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5조(미수료자 등록금 감면) 석사과정 미 수료자로서 5학기 이상, 박사과정 미 수료자로서 7학기 이상 등록하는 학생의 등록금은 교과학점 1~3학점을 수강 신청할 때 등록금의 2분의 1을 감면한다. 다만, 해당 학생은 소정 기일에 학비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6조(등록금 반환사유 및 기준) ① 등록금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국가법령에 의하여 입학(재입학과 편입학을 포함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
2.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
3. 학생이 자퇴를 한 경우

4. 학생이 등록 후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경우

5. 본인의 질병, 사망 또는 천재지변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
6. 학생이 등록 후 휴학한 경우

② 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학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

③ 학기 개시일 (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일)전까지 제1항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 전액을 반환한다.

④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않으며, 수업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.

1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

: 수업료의 5/6 반환

2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31일 이후 6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

: 수업료의 2/3 반환

3.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90일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경우

: 수업료의 1/2 반환

⑤ 반환사유가 학기 개시일로부터 91일 이후 발생한 때에는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. 휴학생의 등록금은 제4항에 따라 수업료를 반환한다. 다만, 학교에서 정한 휴학기간 내에 휴학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업료 전액을 반환한다.

- 제17조(수강신청) ① 수강신청은 매학기 지정된 수강신청 기일 내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.
- ② 매학기 교과학점은 6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, 교과학점 외에 각 과정별로 요구하는 연구지도 학점을 신청해야 한다.
- ③ 제1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교수의 제청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3학기 부터는 학기별로 3학점을 초과로 신청할 수 있다. 단, 초과학점 수강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직전학기의 성적 평균평점이 3.0이상 이어야 한다.

제18조(수강신청 정정) 이미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정정 기간에 본교 수강신청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- 제19조(폐강) ① 교과목 폐강기준은 수강인원 3명 미만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폐강기준에 해당하나 개설 교과목이 수강학생의 수료 및 자격증 취득, 기타 과정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개설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교육과정과 학사운영

#### 제1절 수업연한 및 학점인정

- 제20조(교육과정) ① 본 대학원은 각 호와 같이 행정학과와 정책학과를 둔다.
1. 행정학과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직·인적자원 관리, 성과관리 및 평가, 지방행정, 공공서비스 혁신, 협력적 거버넌스, 공적개발원조 등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.
  2. 정책학과는 공공정책의 분석, 설계, 집행 및 평가 등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야별 정책의제에 대한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제공한다.
- ②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에서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학과별 교육과정과 교과목은 본 대학원에서 정하는 교육과정에 따른다.
- ③ 수업은 정규수업(주·야간)과 주말수업으로 구분하며, 강의, 세미나, 현장실습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.

- 제21조(수업연한 및 수업연한 단축) ① 석사과정의 수업연한은 2년(4학기)로 한다.
- ②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3년(6학기)로 한다.

제22조(재학연한) 석사과정의 재학연한은 입학 후 4년(8학기), 박사과정은 입학 후 6년(12학기)을 초과할 수 없다.

제23조(학점취득 및 이수학점) ① 석사과정 및 박사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과 교과목별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석사과정 학점 이수조건

과정	구분	이수조건	총 이수학점
석사과정	전공필수	6학점	28학점
	전공선택	18학점	
	연구지도	4학점	

## 2. 박사과정 학점 이수조건

과정	구분	이수조건	총 이수학점
박사과정	전공필수	12학점	42점
	전공선택	24학점	
	연구지도	6학점	

② 석·박사과정의 매학기 전공학점 취득은 최소 6학점 이상 최대 9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, 매학기 1학점씩 취득해야 하는 연구지도 과목은 전공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수학점의 총 평균평점이 B학점(3.0) 이상이어야 한다.

제24조(학점인정) ① 석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석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6학점까지, 박사과정에 입학한 자로서 타 대학교의 박사과정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은 9학점까지 전공 관련 과목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단, 취득과목 인정은 본 대학원의 유사과목에 한 한다.

② 석·박사 과정 학생들은 각 과정별로 타학과 개설과목 교차 수강이 가능하며, 석사과정은 6학점, 박사과정은 9학점까지 전공선택과목에 한하여 허용한다.

③ 군 교육기관 및 재학기간 중 교류협정에 의한 국·내외 타대학교나 연수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제청과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6학점까지 이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## 제2절 지도교수 및 종합시험

제25조(지도교수 신청) ① 석·박사과정을 이수하는 자는 1학기 초에 지도교수를 신청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1학기 초부터 논문작성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는 행정전문대학원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이어야 한다.

제26조(지도교수 변경) ① 지도교수의 퇴임,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1년 이상 연구 및 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1. 지도교수 변경신청서
2. 변경 전·후 지도교수의 승인서

제27조(종합시험 과목 및 방법)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전공필수 2과목과 지도교수가 지정한 1과목으로 한다.

② 박사과정 종합시험은 4과목으로 하며, 각 학과별 필수 3과목(전공필수 2과목, 공통필수 1과목) 및 지도교수가 지정한 전공선택 1과목으로 한다.

③ 종합시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.

제28조(종합시험 응시자격) ① 석사과정의 종합시험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, 1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.0(B학점)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.  
② 박사과정은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24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.0(B학점)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.

제29조(종합시험 배점) ① 석사과정 종합시험의 점수배점은 전공필수(2과목)는 각 과목별 30점,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40점으로 하며, 합격점수는 70점(100점 만점)으로 한다.  
② 박사과정 종합시험의 점수배점은 필수(3과목)는 각 과목별 20점, 지도교수 지정과목은 40점으로 하며, 합격점수는 70점(100점 만점)으로 한다. 단, 각 과목별 70%이하는 과락으로 한다.

제30조(종합시험 응시절차 및 시기) ①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에 응시원서를 제출한다.  
② 종합시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실시한다.

제31조(종합시험 재응시) 석사와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 가능횟수는 총 3회로 제한한다.

### 제3절 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

제32조(학위청구 자격) 시행세칙 제23조에서 정한 수료에 필요한 최소이수학점을 충족한 후 종합시험에 통과한 자는 석·박사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다.

제33조(학위청구논문 제출 연한) ① 석·박사학위논문 청구를 위한 청구논문 제출은 2회에 한 하며 입학년도로부터 7년을 초과할 수 없다. 단, 군복무(의무복무), 출산휴가, 기타 등은 산입하지 않는다.

② 단, 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본 대학원 과정을 수료하였으나 학위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(이하 특례대상자라 함)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.

1.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국외 장기근무 및 국내 타지역 장기근무, 질병, 가사, 임신, 출산, 시국 사건 등 연구지연을 초래한 사유로 특례신청을 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.
2.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특례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(종합시험)에 합격하여야 하며, 이미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3. 특례대상자는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, 특례자로 인정된 경우 인정받은 학기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4학기 이내에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하여야 한다.
4. 특례대상자가 재직하였던 전공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논문지도 및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새로운 전공으로 변경하되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후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.
5. 특례대상자는 기 위촉지도교수가 퇴임 또는 유고시 현재 재직 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.

제34조(학위청구논문 제출 절차 및 시기) ① 석·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청구논문제출 승인서를 지도교수로부터 승인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행정실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석·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전기 4월 말, 후기 10월말까지로 한다.

제35조(학위청구논문 작성 용어) 논문은 국·한문 혼용(원어 포함)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논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.

제36조(논문심사 위원회) ① 석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으로 구성하며,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②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회는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, 최소 1인 이상 박사학위를 소지한 외부교수 또는 전문가를 포함 하며,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.

③ 논문심사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으며,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7조(논문심사 방법) ① 논문심사는 논문내용의 타당성과 적격성 심사 및 구술시험으로 한다.

② 석사과정 논문심사의 최종 판정은 합격, 불합격으로 하며, 합격은 심사위원 2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③ 박사과정 논문심사의 최종 판정은 합격, 불합격으로하며, 합격은 심사위원 5인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38조(학위수여) ① 학위수여에 필요한 소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는 본 대학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또는, 박사학위를 수여한다.

② 석사학위의 수여조건 및 학위는 각 호와 같다.

1. 행정학석사(Master of Public Administration) : 행정학과 소속으로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행정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
2. 정책학석사(Master of Public Policy): 정책학과 소속으로 석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정책학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
③ 박사학위의 수여조건 및 학위는 각 호와 같다.

1. 행정학과 학술박사(Ph.D.)와 전문박사(Doctor of Public Administration) : 행정학과 소속으로 박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행정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.

2. 정책학과 학술박사(Ph.D.)와 전문박사(Doctor of Public Policy) : 정책학과 소속으로 박사학위 수여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정책학박사학위를 수여한다.

④ 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본 대학원 학사운영내규로 따로 정한다.

제39조(학위취소) 본 대학원에서 학위를 수여받은 자가 학위취득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본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이 학위를 취소한다.

#### 제4절 수료연구생

제40조(수료연구생 및 수료생) ① 수료연구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매학기 소정의 “등록” 및 “수료연구지도”를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.

② 수료생은 해당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, 수료연구생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을 말한다.

제41조(등록) 수료연구생은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, 납부 시기는 학교의 소정 등록금 납입기간으로 한다.

제42조(영구수료) 수료 후 논문제출연한(재학연한)이 경과하면 영구수료 처리되어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.

제43조(수료연구생의 권리) ① 지도교수의 연구논문지도를 받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연구 활동의 참여기회를 보장한다.

③ 재학생에 준하는 연구를 위한 시설(도서관 및 실험실습실 등)을 이용할 수 있다.

④ 소정의 의료공제회비를 납부하고 의료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⑤ 수료연구생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#### 제5절 장학금

제44조(장학금) 입학성적이 우수한 신입생과 학업성적이 뛰어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재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B+(3.5)이상이어야 한다.

제45조(포상과 징계) ① 학업에 충실하고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된 학생 또는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.

② 학생으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위원회의 운영

제46조(행정전문대학원위원회) 본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장 외에 본 대학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.

제47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말미암아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제48조(대학원위원회 소집 및 운영) ①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



장이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.

③ 그 밖의 본 대학원 대학원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49조(위원회의 기능)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학생의 입학 및 수료,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
2.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
3. 교과과정의 편성, 개정에 관한 사항
4. 본 대학원 시행세칙 및 규정의 제정과 개폐에 관한 사항
5. 학생상벌에 관한 사항
6. 기타 본 대학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

제50조(전임교원회의) ① 전임교원회의는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이 소집하고 대학원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.

②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.

③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교 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」을 준용한다.

제51조(대학원입학 및 관리운영) 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제5장 제17조 및 제18조를 따른다.

제52조(준용)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」을 따른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로 시행한다.(제10조 제4항 개정, 제17조-제19조 신설, 제23조 제2항 개정, 제24조 개정, 제32조 개정, 제33조 제2항 신설, 제38조 제2항 제2호 개정, 제51조 신설)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12조 개정, 제15조 개정, 제24조 개정, 제25조 개정, 제27조 개정, 제29조 개정, 제31조 개정, 제38조 개정, 제44조 개정, 제19조 신설, 제50조 신설)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1조 개정, 제16조 개정, 제51조 신설)
2. 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는 “일반대학원 입학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”을 준용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제14조제4항 개정, 제15조 개정, 제21조제1항 개정, 제21조제3항 삭제, 제22조 개정, 제23조 개정, 제25조 개정, 제28조제1항 개정)
2. (경과조치) 이 개정 세칙은 2020년 3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.